

예 산 총 칙

2021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038,394,630	31,151,839
일반회계	960,415,652	28,812,470
특별회계	77,978,978	2,339,369
공기업특별회계	73,891,512	2,216,745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5,584,917	1,367,548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8,306,595	849,198
기타특별회계	4,087,466	122,624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2,439,784	73,194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1,392,259	41,768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255,423	7,663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2021년 재무부담 행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673,518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50,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또는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8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또는 도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잔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연도예산으로 간주처리 할 수 있으며, 간주처리된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이월이 가능하다.